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614번
- 발 의 자 : 전병주 의원 외 (찬성자 14명)
- 발 의 일 : 2019년 4월 1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보수와 적은 복지제도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3조제1항).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제2항).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확대 강화하여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수립토록 함(안 제4조제2항제8호).
-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9.4.8. ~ 4.1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를 개선하여 청소년 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음.

※ 청소년지도자¹⁾는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시설 및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동기유발, 변화촉진, 평가, 상담, 자원동원과 여건조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청소년지도자들과 유사한 직군인 사회복지사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을 마련하였고, 2019년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수를 조정한바 있음.

〈 청소년 종사자 임금 인상률 현황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5%	3급이하:3.5% 1·2급:2.5%	6급이하:4.5% 3~5급:3.8% 1·2급:3.2%	2.5%	3.8%	5.0%	3.7%	2.6%	7.4%

※ 서울시 시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는 56개 시설에 1,260여명이 종사하고 있음.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19년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조정 내용 >

□ **조정내용**

① **봉급 체계 변경 : 복리후생비 중 교통보조비 기본급 산입**

- 직·호봉 기본급에 근무장려수당, 장려수당가산금, 직무수당, 직급보조수당, 교통보조비 포함 적용

② **6개 직급 99개 호봉(4~7급, 기능직, 고용직)군 조정·반영**

- 임금 하락자 차액보전(전년도 유지) 및 '19년 인건비 1.8% 인상률 반영

- 임금인상률 1.8% 미만 직·호봉 임금은 1.8% 인상률로 조정 반영

○ 본 개정조례안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 유출을 막고, 청소년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며, 지위향상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3조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그 동안 청소년활동 관련 계획²⁾은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활동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관련 계획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권익, 전문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u>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u>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u>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u>

2)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실행 계획,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등

<p>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u>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u>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	---

○ 다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권익에 대해서는 유사·동종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조사 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적절한 직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직무는 16개의 능력단위와 74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국가직무능력 표준 〉

능력단위	하위요소
1. 사업기획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상황분석하기, 사업방향결정하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2.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자료 조사·분석하기, 기획회의하기, 마케팅 계획수립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작성하기,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하기

능력단위	하위요소
3.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	지도자 교육하기, 참여자 모집·확인하기, 프로그램 공간과 기자재 확보하기, 프로그램 실행하기
4.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평가계획 수립하기, 평가도구 개발하기, 평가실시하기, 평가보고서 작성하기, 프로그램 사후관리하기
5. 자원봉사활동 운영	자원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하기, 자원인력 모집·교육·운영하기, 자원인력 슈퍼비전하기, 자원봉사활동 평가관리하기
6. 청소년활동 인증관리	인증프로그램 기획하기, 기준요소별 프로그램 작성하기,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기/평가하기/사후관리하기
7. 청소년자치활동 운영	청소년자치활동 사업계획 수립하기, 청소년지도인력 교육하기, 청소년 참여자 모집하기, 청소년자치활동 지원하기/평가하기
8. 청소년생활지도	생활지도사례 분석하기, 생활지도 계획하기/실행하기, 지원체계 활용하기, 생활지도 관리하기
9. 청소년기관 행정지원	행정업무 지원하기, 시설관리업무 지원하기, 기관운영위원회 관리하기, 기관평가 수행하기, 기관 진단·보완하기
10.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지역자원 파악하기, 연계자원 조성하기, 네트워크 운영·관리하기, 네트워크 평가하기
11. 청소년활동정보관리	청소년활동 정보 수집·정리하기/활용하기/사후관리하기
12. 청소년활동 안전·위생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기, 안전관리 조직 편성하기, 안전교육하기, 안전 점검하기, 위생 점검하기, 안전보험 관리하기,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13. 교육훈련	교육훈련 요구 분석하기/계획하기/실행하기/결과 평가하기
14. 청소년권익증진활동 지원	청소년관련 이슈 선정하기, 실천전략수립하기, 연대협력 구축하기, 청소년권익증진활동 실천하기/평가하기
15. 청소년현장실습지도	현장실습지도 계획수립하기, 실습생 선발·교육하기, 현장실습 지도하기, 현장실습 결과 평가하기
16. 청소년조사연구	청소년특성연구하기, 청소년사업 분석하기, 청소년유관정책 파악하기, 연구결과 활용하기

※ 출처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NCS(<https://www.ncs.go.kr/>)/ 재구성

- 안 제4조제2항제8호는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 청소년지도자의 ‘권익개선’을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유학기, 주5일제 수업, 평일 낮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 활동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 한편, 2019년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나, 직급체계의 상이로 1~2급의 임금이 과도하게 증액되었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보수 권고안)’을 참고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7. (생략) <u>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u> 9. ~ 10. (생략) ③ ~ ④ (생략)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u>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u>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現청소년지도사 수당체계’와 ‘여성가족부의 임금가이드라인(권고안)’ 비교 시 참고사항

아래의 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맞춘 2019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과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의 보수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수당의 체계(기본급에 수당의 포함 여부 등)의 상이로 모든 수당을 합한 보수총액은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이 월등히 큰 액수로,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현실적인 수준인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증액했음.

2019년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단위: 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1	3,028,000	2,794,000	2,360,000	2,074,000	2,041,000	2,031,000	2,021,000	1,880,000	1,759,000
2	3,093,000	2,854,000	2,413,000	2,118,000	2,051,000	2,041,000	2,031,000	1,889,000	1,767,000
3	3,163,000	2,918,000	2,478,000	2,182,000	2,061,000	2,051,000	2,041,000	1,899,000	1,776,000
4	3,230,000	2,980,000	2,539,000	2,228,000	2,071,000	2,061,000	2,051,000	1,908,000	1,785,000
5	3,289,000	3,035,000	2,598,000	2,289,000	2,081,000	2,071,000	2,061,000	1,917,000	1,794,000
6	3,450,000	3,183,000	2,732,000	2,425,000	2,177,000	2,128,000	2,071,000	1,927,000	1,809,000
7	3,539,000	3,265,000	2,817,000	2,511,000	2,278,000	2,209,000	2,079,000	1,934,000	1,820,000
8	3,636,000	3,355,000	2,903,000	2,582,000	2,379,000	2,288,000	2,155,000	2,005,000	1,875,000
9	3,722,000	3,434,000	2,991,000	2,667,000	2,477,000	2,373,000	2,232,000	2,076,000	1,942,000
10	3,825,000	3,529,000	3,078,000	2,741,000	2,573,000	2,443,000	2,324,000	2,162,000	2,022,000
11	3,918,000	3,615,000	3,162,000	2,835,000	2,673,000	2,526,000	2,411,000	2,228,000	2,084,000
12	3,979,000	3,671,000	3,208,000	2,871,000	2,751,000	2,583,000	2,478,000	2,275,000	2,129,000
13	4,029,000	3,717,000	3,253,000	2,926,000	2,824,000	2,650,000	2,547,000	2,312,000	2,163,000
14	4,088,000	3,772,000	3,310,000	2,985,000	2,894,000	2,715,000	2,611,000	2,371,000	2,211,000
15	4,143,000	3,822,000	3,357,000	3,051,000	2,960,000	2,776,000	2,673,000	2,429,000	2,249,000
16	4,224,000	3,872,000	3,403,000	3,133,000	3,043,000	2,854,000	2,750,000	2,503,000	2,294,000
17	4,271,000	3,919,000	3,455,000	3,194,000	3,104,000	2,910,000	2,806,000	2,557,000	2,336,000
18	4,318,000	3,975,000	3,503,000	3,253,000	3,162,000	2,965,000	2,860,000	2,599,000	2,381,000
19	4,377,000	4,021,000	3,559,000	3,307,000	3,217,000	3,016,000	2,912,000	2,658,000	2,422,000
20	4,425,000	4,075,000	3,603,000	3,361,000	3,270,000	3,066,000	2,961,000	2,706,000	2,462,000
21	4,479,000	4,121,000	3,656,000	3,439,000	3,348,000	3,141,000	3,036,000	2,779,000	2,507,000
22	4,534,000	4,176,000	3,709,000	3,487,000	3,396,000	3,187,000	3,082,000	2,823,000	2,552,000
23	4,593,000	4,227,000	3,762,000	3,532,000	3,442,000	3,231,000	3,126,000	2,864,000	2,596,000
24	4,641,000	4,284,000	3,812,000	3,576,000	3,485,000	3,273,000	3,168,000	2,904,000	2,644,000
25	4,697,000	4,342,000	3,868,000	3,618,000	3,527,000	3,313,000	3,208,000	2,942,000	2,685,000
26	4,751,000	4,396,000	3,921,000	3,676,000	3,585,000	3,371,000	3,265,000	2,995,000	2,734,000
27	4,809,000	4,451,000	3,973,000	3,714,000	3,623,000	3,408,000	3,301,000	3,029,000	2,779,000
28	4,866,000	4,506,000	4,031,000	3,750,000	3,660,000	3,444,000	3,337,000	3,062,000	
29	4,924,000	4,561,000	4,080,000	3,784,000	3,694,000	3,477,000	3,370,000	3,093,000	
30	4,975,000	4,615,000	4,135,000	3,818,000	3,727,000	3,510,000	3,403,000	3,124,000	

여성가족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보수 권고안

(단위: 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596,500	2,362,700	2,209,700	1,924,100	1,817,600	1,750,600	1,696,100
2	2,692,700	2,459,300	2,299,000	2,013,600	1,900,500	1,794,200	1,738,200
3	2,791,500	2,557,400	2,391,600	2,106,100	1,988,400	1,842,300	1,780,700
4	2,891,200	2,657,700	2,488,000	2,200,400	2,080,600	1,897,000	1,831,600
5	2,992,500	2,759,400	2,586,900	2,297,500	2,176,100	1,955,100	1,884,600
6	3,094,700	2,862,100	2,687,800	2,397,400	2,273,900	2,045,400	1,935,000
7	3,198,200	2,965,800	2,790,200	2,497,500	2,372,600	2,136,000	1,993,500
8	3,301,900	3,070,000	2,893,900	2,598,000	2,471,600	2,222,900	2,057,200
9	3,406,600	3,174,400	2,997,900	2,698,800	2,565,900	2,306,000	2,116,600
10	3,511,100	3,278,800	3,102,700	2,793,300	2,656,000	2,384,400	2,173,100
11	3,615,800	3,384,100	3,200,500	2,882,900	2,740,900	2,460,500	2,229,700
12	3,724,400	3,483,100	3,294,900	2,971,100	2,824,200	2,534,800	2,293,800
13	3,825,300	3,575,900	3,384,500	3,054,200	2,903,400	2,606,300	2,359,900
14	3,918,900	3,662,400	3,468,200	3,132,600	2,979,200	2,674,400	2,424,200
15	4,005,100	3,743,800	3,547,100	3,208,000	3,051,500	2,739,900	2,485,500
16	4,085,700	3,820,600	3,621,400	3,278,500	3,120,000	2,803,200	2,545,000
17	4,160,500	3,891,900	3,691,200	3,345,900	3,185,600	2,862,200	2,603,000
18	4,230,000	3,958,600	3,757,200	3,409,600	3,248,400	2,919,600	2,657,100
19	4,294,300	4,020,800	3,819,400	3,470,000	3,307,500	2,974,600	2,710,200
20	4,354,500	4,078,900	3,877,500	3,526,800	3,363,900	3,027,000	2,761,000
21	4,410,300	4,133,300	3,932,300	3,581,600	3,417,600	3,077,100	2,808,800
22	4,461,900	4,184,300	3,983,800	3,633,000	3,468,400	3,125,300	2,854,700
23	4,509,500	4,232,200	4,032,500	3,681,300	3,517,400	3,171,000	2,898,300
24	4,554,000	4,277,200	4,077,800	3,727,300	3,564,100	3,215,100	2,940,400
25	4,590,600	4,318,500	4,120,800	3,771,100	3,608,200	3,257,000	2,980,500
26	4,625,500	4,353,400	4,161,200	3,812,300	3,650,400	3,297,700	3,016,600
27	4,657,900	4,385,600	4,194,700	3,851,600	3,686,300	3,331,500	3,047,800
28		4,416,400	4,227,000	3,884,500	3,719,600	3,364,200	3,077,900
29			4,256,600	3,915,300	3,751,800	3,395,000	3,106,800
30			4,285,300	3,945,800	3,782,600	3,425,000	3,135,000
31				3,973,900	3,811,500	3,454,000	3,162,600

- 안 제7조는 시장이 효과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처우 개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u>노력하여야 하며</u>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u>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청소년 기본법³⁾」과 「청소년활동 진흥법⁴⁾」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가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제도마련, 여건조성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 3) 「청소년 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